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KC대학교의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계산서, 자금계산서 및 각 부속 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KC대학교의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1. 지적사항 : 별지 참조

2. 기타의견 : 별지 참조

2017년 4월 27일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감사인 등록

피감사자(입회인)

직명 KC대학교 기획처장

성명 이상호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감사

- 일 시 : 2017년 4월 21일(금)~27일(목)
- 장 소 : 대학 본관 회의실

■ KC대학교

<총 평>

학교의 모든 의사의 결정과정, 집행과정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이중삼중의 감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 탓인지 시스템의 부재 탓인지 규정미비와 관리소홀이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작은 규모의 공동체이다 보니 구두로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하더라도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어떤 의도로 시작된 것인지조차 변질된 경우가 많음을 느꼈다.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교원 연봉 체계의 문제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과가 조정되어 최저시수를 채우지 못하는 교수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연봉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조개혁이 성공하면 폐과·과원에 따른 교원의 정리와 최저시수를 채우지 못하는 교원에 대한 연봉조정부터 규정하고 실시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과 대책 없이 구조개혁이 실시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교의 재정상황을 검토해볼 때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만큼 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하는 교원의 정리와 연봉조정 규정을 시급히 만들 것을 권고 한다.

등촌중학교 다목적관 교비 전용 문제

2011년 등촌중학교 다목적관 건축에 대학교 교비 13억6천여만원이 들어간 것이 분명함에도 현재 대학교에서는 다목적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

다. 등촌중학교 다목적관은 2011년도 건축을 시작하여 2012년 준공되었으나 미등기 건물로 남아 있어 등촌중학교가 등기는 물론 운영면에서도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대학이 다목적관의 일부를 이용하고자 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 교비전용에 대하여는 대학당국이 투자 결정, 자금 집행 등 진행과정을 철저히 조사 규명하여 책임자 등에 대한 구상권행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관 건축비 과다 문제

간호학부, 식품영양학부를 신설하며 ‘과학관’을 건축한 것은 학교발전을 위해 뜻 깊은 일이었으나 건축면적 1,329.35㎡에 40억원(평당 약480만원)이 넘는 건축비가 소요된 점, 6층으로 시공발주를 하였다가 3층으로 건축한 과정에서 약6억원의 공사비가 불필요하게 추가된 것에 대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의 책임자를 가려내는 등 학교가 엄정하게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바이다.

학술연구소 연구원 관리문제

KCU학술연구소의 연구원에 대한 수행업무 자료 미비 및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 등 연구원 관리 소홀 등 위법이 있었음이 확인된 바, 이에 대하여 대학당국이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업무수행기간 이외의 급여는 환수조치하도록 하고 이후 운영지침등을 개정 보완하여 이러한 대학재정의 누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축구부 외부기탁금 및 장학금 문제

축구부 창단 승인 요청자료가 전혀 없어 축구부(단)에 대한 운영 및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듦다. 또한 축구단 단원에 대한 축구단 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장학금을 중복수여했다. 학교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 고루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되며 이후 운영 지침 등을 개정 보완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또 축구부

근로장학생에 대한 선정 및 근로감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하였다. 특히 축구부 창단식 당시(2016년 3월 11일) 기탁 받은 외부 기탁금이 2017년 4월, 법인의 감사실시 자료요청 공문 발송이후 입금되는가 하면 이미 대학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발부된 곳에 대하여도 학교에 입금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진술에 따르면 사적 기부금이라고 하나 축구단은 분명히 공적기구로서 학교기부금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학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후속조치가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창업지원센타 사용

학교법인 수익용부지의 건물을 대학이 ‘창업지원센타’로 사용하게된 경위, 내용을 보고하라. 현재 사용중인 상황과 경위도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위탁업체 과다의 문제

현재 대학은 육아종합지원센터 2곳, 어린이집 5곳, 도서관1곳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들로 인해 학교법인은 2016학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21,295,410 원을 내야 했다. 학교규모에 비해 과다한 위탁업체 수는 정리해야 하며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위탁업체를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